

성남 아이파크 디어바 지식산업센터(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 승인번호 : 경기도 성남시청 기업혁신과-4296 (2024.04.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8조의 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주)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유티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임대 시설현황 및 개요					
1.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52-1 일원						
2. 건설규모						(면적단위 :㎡)
구분	대지면적	건축규모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건설규모	11,088.00	지하4층, 지상23층	7,732.43	83,481.90		
3. 용도 시설별 면적						(면적단위 :㎡)
용도	전용면적	충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약면적	오실수
지식산업센터	33,410.24	12,696.14	4077.70	16,232.18	66,416.26	248
노유자시설(복지관)	4,335.79	2,334.34	529.18	2106.52	9,305.83	-
근린생활시설	4,128.69	1,121.31	503.91	2005.90	7,759.81	43
합계	41,874.72	16,151.79	5,110.79	20,344.6	90,481.90	291
※ 지식산업센터 일부(4층~5층) 공공업무시설(복합문화센터 등)로 사용 예정으로 공업지구 모집공고 대상에서 제외 ※ 세부 오실률 면적 및 임대조건은 접수처문서(☎1600-7770)하시기 바랍니다.						
4. 층별 주요시설						
구분	주요시설	비고				
지하 4,3층	기계전기실, 주차장 등	• 주차대수 : 509대 - 법정(330대) 대비 154.24%				
지하 2층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					
지하 1층	주차장					
1층	근린생활시설, 유패공간, 주차장 등					
2층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복지관), 유패공간 등	• 4층, 5층은 공공업무시설(복합문화센터 등)로 사용 예정				
3층	노유자시설(복지관), 옥상정원, 쉼터공간 등					
4층~23층	지식산업센터					

5. 설립자의 명의(임대사업자)

- 설립자 : (주)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유티관리부동산투자회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3) - 사업자 : HDC현대산업개발(주)

6. 임대예정일 : 2024년 5월 입주 예정 (연장 사건 및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주 자격 및 입주대상, 제외 업종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의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8조(도시형공장) 및 제28조의 5(지식산업센터의 임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및 제36조의 4(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입주대상 업종

가. 산업(공업)시설

『산업집적법, 제28조(도시형공장), 같은 법 제28조 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4(지식산업센터의업종)의 규정에 의한 입주 가능 업종에 한정

1) 제조업(산업집적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공장등록을 완료한) 및 산업지역 안에 제조시설(산업시설, 지식산업, 정보통신시설을 영위하는 제조업 외의 사업) (산업집적법 제1항령, 제20조의 2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사업지역)에 있는 사업지역에 있는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상기 제2조 및 제2조업 외의 사업을 존중하여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사업 지역)에 있는

※ 『산업집적법, 제36조에 의거 공장시설을 임대받은 임차는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과 반도시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입주계약 및 입주증준문의 Q11-700~2800,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나. 산업외의 대상 임대 시설

- 『산업집적법, 제28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및 대상이 아닌 업종
- 성남산업단지 관리 기금제에의해 마련 산업단지 입주 제한 업종
- 『대기업경쟁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대기업요원출발 특별 사살과 약취자집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약취해살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업, 기타 한 경권한 범상조 특별 유예해결 또는 중공속 배출 업체
- 염색, 피혁, 사면트, 아스팔트 제품제조업, 도축업 등 산업단지 입주 부적격 업체
- 고, 파,연(연속 건축물 설계용 조차)기계장치 설치업
- 위험물 제조업체
- 기타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요소 및 다른업체의 생산활동에 인접하게 지장을 주는 공장
- 『소방법, 제15조, 제27조)에 의한 안전장치 이상의 위험물, 특수기구를 취급하는 공장
- 기타(기계, 전기, 설비 등)설계장 입주 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공장
-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제한된 업종 및 시설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업체

3

건축물의 구조와 입주대상시설의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충별-용도별	높이(m)	
높이(층고)	공장시설	4층~23층	4m
	노유자시설	2층 / 3층	5m / 4m
	근린생활시설	지하2층 / 1층 / 2층	5m / 4m or 6m / 5m
	※ 시공 및 연장 여건에 따라 층중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설계(적재)하중	충별-용도별	허용하중(KN/㎡)	
	공장시설	4층~23층	3.5 KN/㎡
	노유자시설	2층~3층	5.0 KN/㎡
	근린생활시설	지하2층, 1층~2층	5.0 KN/㎡
	주차장	지하4층~1층	3.0KN/㎡
주차장/하역장	지상1층	12.0 KN/㎡	
소음, 진동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별표 5)에 의함		
내진능력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VII-0.197g		
미감	구분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전장	지장성(불연연소제품)	지장성(불연연소제품)
	벽체	천연경수성페인트	천연경수성페인트
	바닥	비닐타일	비닐타일
건축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전력공급	전력공급량	9,750 KVA	
통상공급	국선	600P	
	내선	1,800P	

※ 상기내용 중 일부는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다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반드시 건축허가 또는 실시도면 기준을 참조하여야 함
※ 임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정방 비비공의 총 허용 하중을 명기해야 함

4. 임대가격과 보증금, 임대료 등의 납부시기 및 방법

1. 임대기간

최초 계약기간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5년(해당 월의 말일까지)이며, 임대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최초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당사 등을 거쳐 5년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 갱신가능

※ 임대기간은 가장 10년(2034년 5월까지) :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분양전환허가 기준입주자에 대해 분양 우선순부며

2. 입주부담금

- 입주부담금의 구분 :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 충별 모실 및 면적당 보증금, 임대료

구분	오실	전용면적(㎡)	계약면적(㎡)	(㎡/인)AVAT 포함, 계약면적 기준)		비고
				보증금	임대료	
지식산업센터	6층	16	1,675.60	3,330.97	95,669	8,649
	7층	16	1,675.60	3,330.97	95,669	8,649
	8층	16	1,675.60	3,330.97	96,069	8,750
	9층	16	1,675.60	3,330.97	96,069	8,750
	10층	16	1,629.41	3,238.59	96,632	8,807
	11층	15	1,583.17	3,147.21	97,865	8,872
	12층	15	1,583.17	3,147.21	97,230	8,904
	13층	16	1,675.60	3,330.97	97,270	8,899
	14층	4	1,807.67	3,593.47	101,295	8,990
	15층	4	1,807.67	3,593.47	101,295	8,990
	16층	4	1,807.67	3,593.47	101,851	9,057
	17층	4	1,807.67	3,593.47	102,965	9,178
	18층	15	1,581.99	3,144.88	102,708	9,232
	19층	15	1,581.99	3,144.88	101,436	9,177
	20층	15	1,581.99	3,144.88	102,708	9,287
	21층	15	1,581.99	3,144.88	102,072	9,230
	22층	15	1,581.99	3,144.88	103,026	9,318
	23층	1	1,929.52	3,835.70	98,548	8,724
	계	218	30,243.90	60,121.84	99,448	8,966

※ 상기 층별 임대금액과 별도로 월 관리비가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지함
※ 상기 임대기간은 충별 평균 금액으로 접수(허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충별 임대 가능 오실, 오실률 세부 면적 및 배지, 임대금액 등은 분양용보관 문(☎1600-7770)하시거나, 성남재생 벤처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https://www.i-park.com/seongnamurban)에 공고문과 청약 게시된 자료 등에서 확인 가능함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최초 임대차계약(2024년 5월)을 기준으로 하며 잔대다 직전 대비 5%씩 인상함

※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기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관리규약에 명시된 연회 요율을 적용한 이자를 채산된 임대료 및 관리비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3) 관리비 : 추후 별도안내

3. 납부방법 및 시기

구분	납부방법	납부시기
보증금	일시불	계약체결시 계약금 10%, 입주시 90% 납부
임대료	1개월 단위 선 납부	최초입주일 및 해당일자 전월 말일
관리비	1개월 단위 후 납부	매달말 기준 고지 예정

4. 납부금액 및 계약

임차인은 보증금 및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납부시 아래의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납부된 보증금 및 임대료(가 계약일금 또는 현금납부 등)는 임대 금액 납부로 인정받지 못함

구분	납부은행	납부계좌	예금주
보증금(계약금)	농협은행	301-0348-8590-11	(주)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유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보증금(잔금)	농협은행	오실률 부여된 가상계좌	각 오실률
임대료	농협은행	오실률 부여된 가상계좌	각 오실률

※ 무통장입금시 의뢰번호에 오수 및 임차인의 성명(업체명) 기재(예: 501호의 경우 - 501[업체명]) ※ 관리비 납부계좌는 추후 별도 고지

5. 입주예정일 : 2024년 05월 입주 예정

- 정당한 입주예정일은 추후 지정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사전 통보함
- 보 통 건축물은 건축공정율 100% 시점에 공급하는 중공 오 임대 사업주이므로 사전에 사업부지 연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건축물의 배지, 외관, 주변 현황 및 연장여건, 임대대상 오실의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신 후 임대차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임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공중지의 관공사역이 아닌 경매여건의 급격한 변동이나 천재지변, 행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행정절차 지연, 법원명령, 결정, 판결, 관계법령 제정 및 개정, 도시불균, 화재재발급, 불기만안 화재확보 관련 등의 예외시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하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6. 부대/복리시설 및 공동시설의 내용 및 규모

1) 부대시설

구분	주차장	부대시설		지원시설
		일반용	엘리베이터	
규모	면적 : 20,344.60㎡ 대차 : 509대	일반용	7대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 : 4,128.69㎡ 계약면적 : 7,759.81㎡
		비상용/자용용	2대/1대	

※ 상기 시설 일부는 시공, 인허가 과정 및 입주시 지적, 용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5

임대 입주자의 선정 일시/방법 및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1. 선정일시

- 임대차계약 신청일 및 일시 : 임대차계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로 함
- 임대차계약 신청일 및 장소 : 성남아이파크디어바낸 지식산업센터 분양용보관(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3관전트크노 1층)

2. 임대차계약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 신청서(당사의 신청양식) 1부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별첨서류) 사본, 인감(별첨인)증명서 각 1부
- 반드시 분양용보관을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신청서 및 기비하며,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계약서 및 계약의 신청용 지참
- 기타 사업주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동일용지)
- 채권서류는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사전영수증

3. 선정 방법

- 상기 사업주모집공고 제5호(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의 유지기준에 의해 임대차계약 체결
- 실질적 기준에 우선 순위 적용하여 선정함
- 반드시 분양용보관을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신청서 및 기비하며,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계약서 및 계약의 신청용 지참
-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신청인의 실업률 기입여부, 업종 적합성 및 사업여력, 임대면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찰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공공시설을 훼손 또는 변경(형성 변경 또는 중공 중대하거나 기타법령으로 인정한) 또는 시공계약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기간 외의 장면에 담보제공 담보제공 납부하지 않은 때
-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일이나 임대차 계약의 목적 외로 이용하였을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입주하거나 입주 자격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부작업단 업종으로 변경하여 입주하는 행위
- 기준 시설물의 원형변경행위, 타업체에 위해 되는 행위 또는 위해 되는 용도의 사용 행위시
- 각종 정정 설계기준(건축, 하중, 소음 등)을 초과하여 기계 및 장비만반 설치하거나, 사파워업을 반반, 간접 유출 등 타 업체에 위해가 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때
- 집합건물에 위해 되는 일체의 이용행위 중 공 9) 공용시설 및 면적을 부당하게 잠가여 사용한 경우
- 10) 관리기구가 정하는 제반규정 위반시
-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거나 관계기관 등의 판단에 따라 입주자 부작업단 업체로 판단되거나 성남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입주계약 체결기 거부하기 등임
- 12) 임차인이 피산, 외상 등 본인의 신장을 허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 13) 기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임대 후 분양 방법 및 시기

1. 분양전환 대상자 선정 ① 분양전환 당시 입주자 우선 선정 ② 입주자가 없는 해당 오실은 분양공고 이후 입주자격서 오수 선정

2. 분양전환 가격산정 및 시기

① 분양전환금액은 2개의 경쟁평가법인의 경쟁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② 분양전환 시기는 2034년 5월 31일(예정일)에 변동될 수 있음)로 한다

7

기타 임대 계약 및 입주에 관한 유의사항

※ 본 지식산업센터는 성남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로서 산업집적법 제38조에 따라 공영의 입주(임대)방식은 계약체결 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과의 입주(임대)자격을 사전 협의하여야하며, 공공시설의 임대계약 체결한 자는 지식산업센터 중공업무 오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과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함

1) 임차인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열람하여 임대차 관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알현하여 이해한 후 입주

2)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재, 배포된 홍보물 및 기타 유인물에 표현된 이미지, 명명 등의 CG, 홍보관내 모형 및 유산(생물품) 등은 임차인의 이해를 불기 위하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예정사항상 상한내 용이 일부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4) 분양용보관 등에서의 분양 신청의 유효성이나 제반한 자료 등은 임차인의 이해를 불기 위한 것으로,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책임도 부담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음

5) 각종공 및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의 조장계획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치 및 개발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 의해 사업주진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음

6) 이에 대한 임차인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는 없음,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각 지식산업센터(산업시설) 및 지식산업시설(생활 편의업, 관공토, 소취, 호양)구 유출 및 유역(다인) 등은 홍보관내 이미지, 모형, 유산(생물품)과 일부 설치 할 수 있음, 홍보관내 설치된 전시용품 등은 본 공사 사내 비치시설을 임차 불함

- 건축물 외관에 대한 변경을 하고 및 환경조형(야간조형)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소유권자) 및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 보이드(void) 공간 또는 별도로 인한 경우, 외부공간 등이 유인될 수 있고 계절 및 기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야하며 이로 인해 문제 발생시 임차인이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내외, 숭장기 홀 등은 전체 공용공간이 아닌 개인 사용에 의한 오실의 벽체는 임의로 해체 및 변형할 수 없음
- 공공시설에서 발생되는 부담금(전기, 수도, 가스, 체공과금)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비 등은 입주자가 포함하여 부담함
- 본 건축물의 관리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에 따라 관리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산수금이 부과됨
- 1) 계약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에 의한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2) 누유 우려가 있는 기기 및 장비는 설치할 시에는 입주자가 누유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함
- 3) 계약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에 의한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함
- 4) 누유 우려가 있는 기기 및 장비는 설치할 시에는 입주자가 누유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함
- 5) 당 시설의 지식산업센터 내부는 방수가 반영되지 않은 시설물로 물을 사용하면 업종의 경우 물 사용부하는 입주업체 부담으로 별도로 공사비용을 반드시 시공하여야함
- 6) 입주업체에서 별도로 냉, 난방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복속기 설치하여 하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된 관리업체로부터 사전 승인을 불허 하여야 함
- 7) 지식산업센터(산업시설)는 도시가스 공급받지 않음
- 8) 본 건축물은 별도의 산업배수장치와 시설이 있으므로 특수수질물체는 입주할 수 없음

19) 구내선산업지역의 사업주제(시행규약 등)에서 정하고 분할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의 오실률 또는 관리(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율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1) 각 오실의 시설가공은 사용승인 받은 상태대로 공급하며, 기타 법령에 필요한 인허가에 공사 및 추가 공사(시설(오실)인양, 건물, 하수도, 전기시설, 간벽 등)은 입주자(소유권자 및 임차인)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관리규약/건축법/소방법 등) 관계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퇴거시 완성책구 하여야 함(미준수 시 이로 인한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

22) 입주 개발 엔지니어에 의해 발생되는 허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주자(소유권자 및 임차인)에게 있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하자등 요구 및 정제를 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 및 각종 설계공사 등을 위해 공용부 마감 등을 훼손하는 경우 원안자가 항상책구 하여야 함

23) 각 오실별 전정금수, 비내배수 1개소씩 설치도미의 연결공사는 입주자(임차인) 부담으로 하고, 개별 공급설비는 제공되지 않으며 필요시 입주자(임차인)가 설치하여야 함

24) 각 시설 면적기준은 건물공급면적이 적용되며 각실용에 따라 최소 인정량을 기준하여 설치되므로 입주자(소유권자 및 임차인) 부담으로 증설하여야 하고, 기동 시 장비소를 및 유기 비배설의 영용으로 전설 공과간 환기/배설부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난방기 유무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5) 근린생활시설의 간벽은 관계법 및 행정관청의 지침, 건축경관등의 심의조건, 권리규약 등을 준수하여 입주자(임차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함

26) 지식산업센터 주차장 출입구와 상업시설 주차장 출입구는 분리되지 있지 않으며, 지하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연대의 배지 지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7) 주차장 이용자들의 원활한 통선 보리를 위하여 지하주차장의 설계변경, 또는 차량 자간기 설치 및 위치 변경 등으로 인해 주차대수 및 구역이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차장에 따라 용도 및 층별로 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28) 주차장의 용도 통과 높이는 설비 배관 등의 설치 및 연장여건등을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일부 대형 차량 및 화물 차량의 진입 및 통과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29) 차량경시로에 인접한 실외 경우, 차량 출입차 시 차량경고등 및 경고음으로 인한 및 공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추후용 카스트로는 차량 진입입 및 화를 고려하여 주차구역장 개소 설치 또는 설치 하지 않을 수 있음

30) 건물 내 차량 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변에 의거 정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용료의 납부는 입주자(소유권자 및 임차인)가 부담하여야 함

31) 잔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역이 변경될 수 있음

32) 엘리베이터와 면적이 또는 인접한 장소는 엘리베이터의 운용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33) 본 건물 인근에 도로가 있어 소음과 진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34) 대차 4층, 지상1층에 외기 입하장 및 재출용 창고기 계획되어있으며, 부형적으로 분배가 발생할 수 있음

35)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6) 건물 용도 및 용도에 따라 사용에 제한되는 범위 및 제한이 있으며, 건물 용도에 변경을 수 있으며, 특히 고층층에는 외부 안전을 위하여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